국내 디자인 산업 육성에 필요한 디자인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박정호 명지대 교수

CONTENTS

1. 디자인 기업 피해 현황

2. 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 관련 내용

3. 디자인을 통한 지식재산권 획득과 관련한 내용

4. 대안 제시

1. 디자인 산업의 실태 분석

디자인, 투자 대비 효율성이 가장 높은 창조 지식 산업

부가가치 창출 측면	• 일반 R&D 대비 3배 수준의 효과 유발
투자 대비 매출증대효과	• 디자인 14.4배, 일반 R&D 5배
고용창출 측면	• 취업유발계수(명/10억 원) : 디자인 13.9, 자동차 9.9, 반도체 4.5

1. 디자인 산업의 실태 분석

디자인 전문회사의 전반적인 수익구조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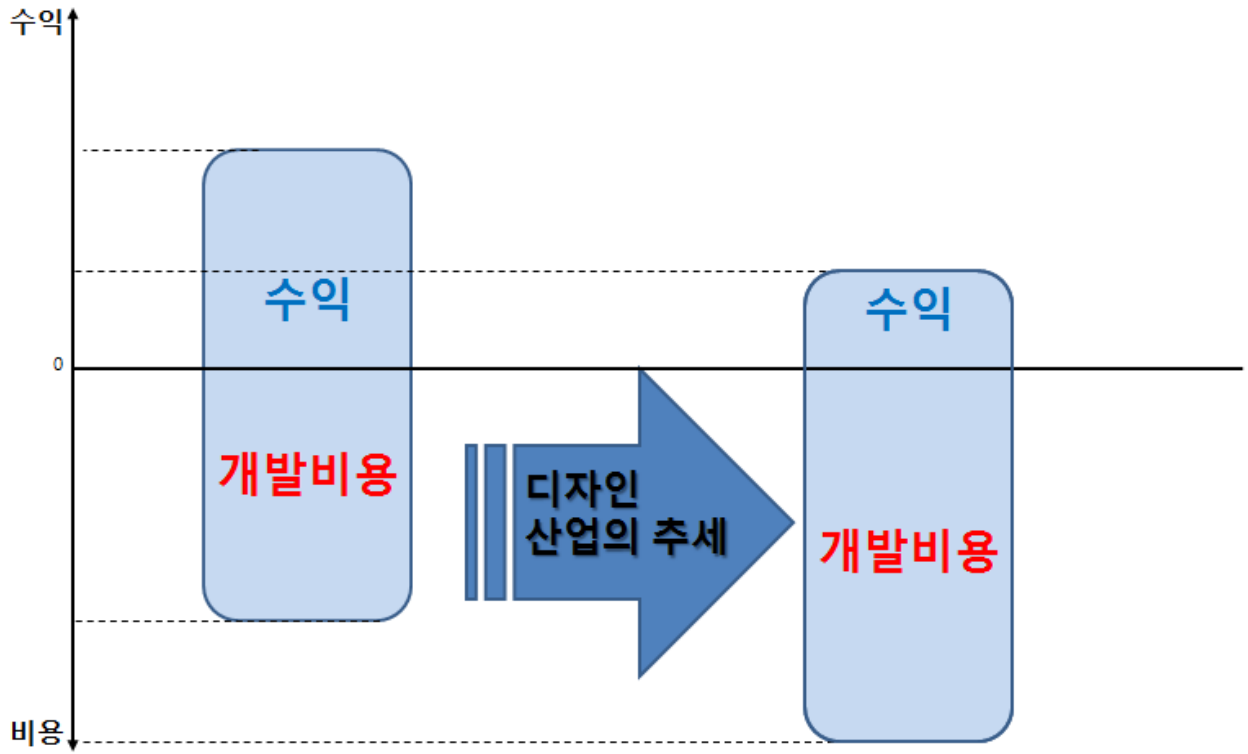

수익구조 악화 원인

1. 과당경쟁

2. 용역 구조 악화

3. 정보 및 협력 시스템 부재

가. 디자인 산업과 기업 저해요인 – 과당

소규모 디자인 전문회사(종사자 수 평균: 5.48명) 급증
'08년 2.5천여 개→ '10년 3천 여 개로 20%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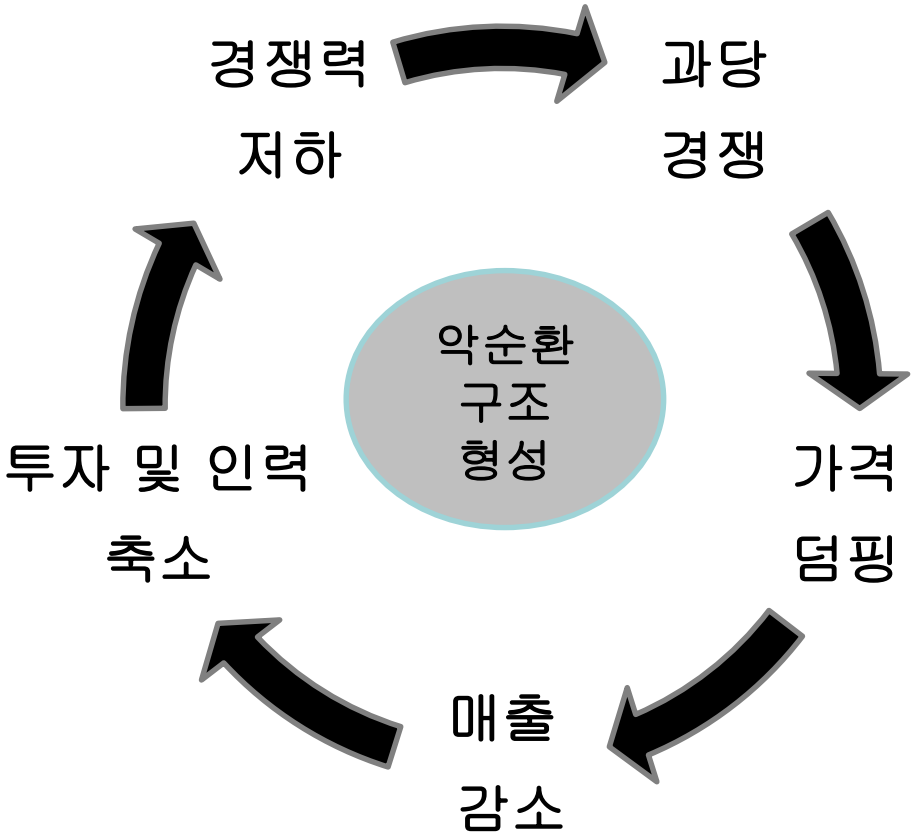

나. 디자인 산업과 기업 저해요인 – 용역

다. 디자인 산업과 기업 저해요인 – 정보 및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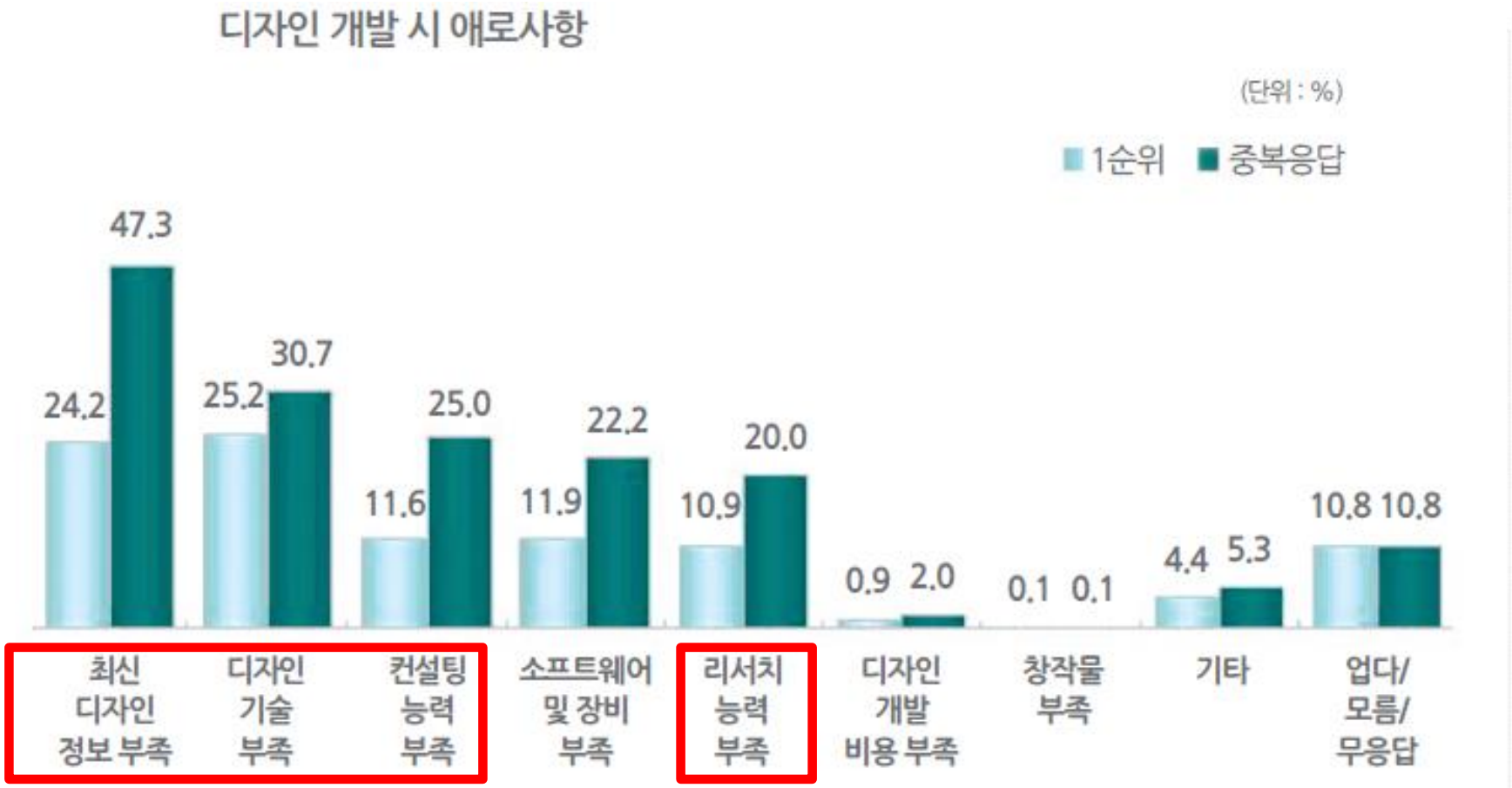

출처: 2011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1. 디자인 산업의 실태 분석

국내 디자인 산업 환경

- 과당경쟁
- 용역 구조 악화
- 정보 및 협력 시스템 부재

< 주요국의 디자인 산업 비교>

산업 규모	영국('09)	미국('06)	일본('09)	한국('10)
금액	28조원	80조원	25.7조원	5.1조원
대학 인력 배출	영국('07)	미국('03)	일본('04)	한국('10)
인원	1만 3천명	3만 8천명	2만 8천명	2만 2천명

세계 90대 디자이너에 한국인은 1명(獨 Design Now ,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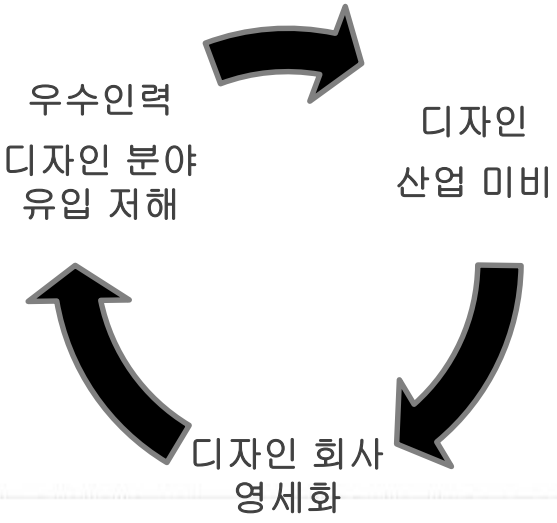

Part-01 | 디자인 기업 피해 현황

1. 디자인 기업 피해 현황

LOTTE DESIGN net
비그신고
Schedule
Search
상세검색
Conference Room Reservations
HOME
MyWork
Drawing
Visual
Image
Manual
Community
Collaboration
Asset
Schedule
Webhard
WorkList
디자인실홈
Manual
Love & Thanks
MyWork

1. 디자인 기업 피해 현황

불공정 거래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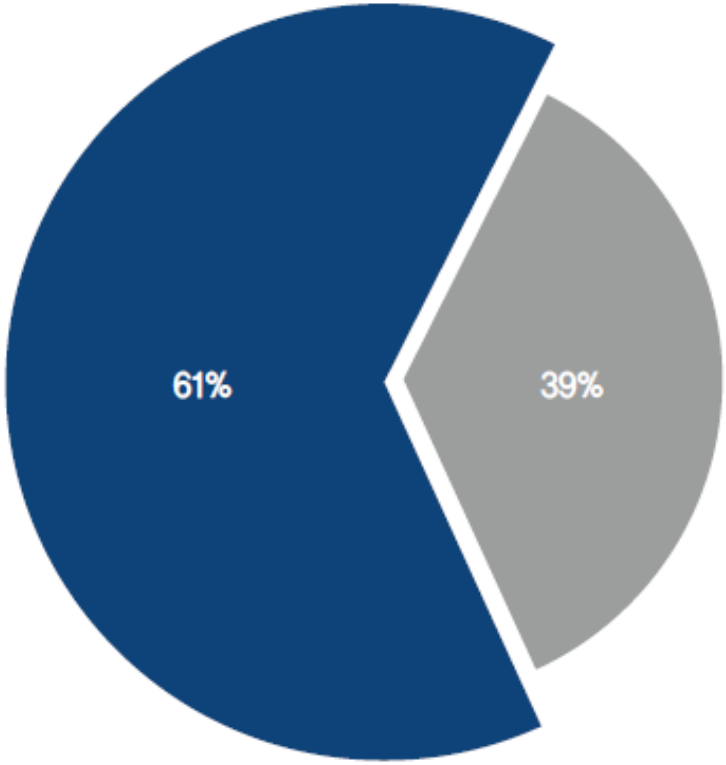

있다 61%　　없다 39%

주요 피해유형

- 입찰참여에 있어, 갑작스러운 프로젝트 무산통보
- 용역대금 지급 지체
- 디자인개발시안에 대한 무상 추가요구
- 계약 해지시 용역대금 미지급

출처: 2012 디자인기업 피해사례집

1. 디자인 기업 피해 현황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의 상대방은 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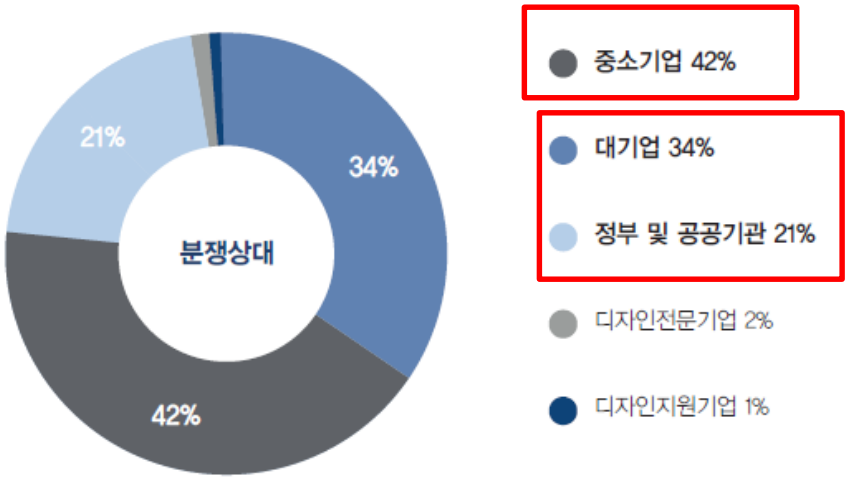

실제 산업구조 중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비중은 전체 산업에서 8%에 불과

출처: 2012 디자인기업 피해 사례집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가장 큰
불공정 거래 요인

1. 디자인 기업 피해 현황

불공정 거래 분쟁 발생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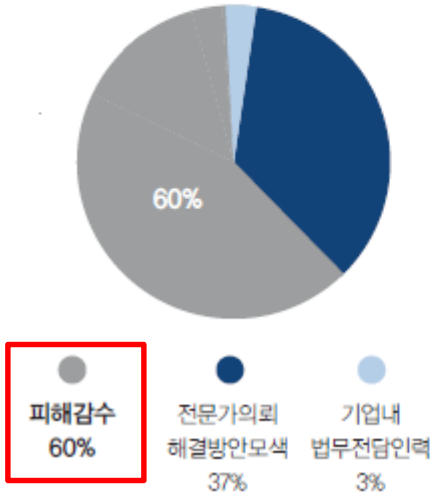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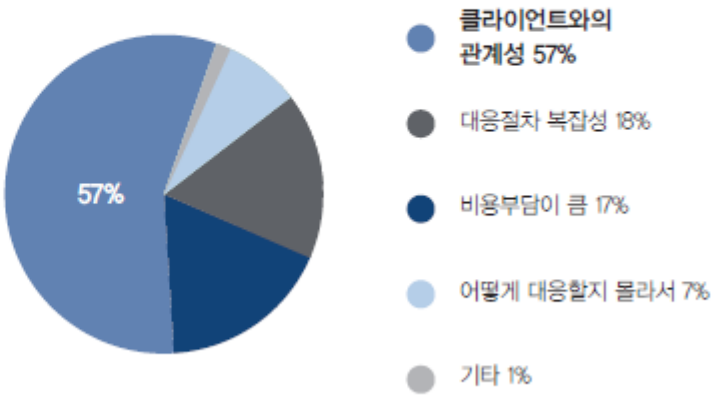

출처: 2012 디자인기업 피해 사례집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 (설문조사 결과 피해를 감수한다는 비율이 60%)

1. 디자인 기업 피해 현황

디자인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환경 → 디자인 기업의 영세화 유도 → 디자인 산업의 발전 저해

해법은?

계약서

IP(지식재산권)

Part-01 | 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 관련 내용

2. 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 관련 내용

디자인회사 내지 디자이너에게 적절한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보장해 주는 것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통해서 디자인회사 내지 디자이너에게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디자인 산업의 발달을 도모

디자인 표준 계약서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작성되어야 함.

2. 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 관련 내용

산업부가 고시하는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1. 각 디자인 분야별 특수성을 배려하기 위한 시도
   - △제품 일반형 △제품 성과보수형 △시각 △인터랙티브 네 가지

2. 성과보수형 표준계약서 도입
   - 기본 보수 외에 제품 판매와 매출 성과에 따른 추가 보수

3. `디자인 공지 증명제도`도 표준계약서와 함께 시행
   - 디자인권이 미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도용 방지

4. 최종 결과물에 대한 검사·승인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

5.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누가 가질지에 대한 기준

2. 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 관련 내용

산업부 고시 표준계약서에 대한 보완 필요 사항

1. 저작권의 특성 반영 안됨.
   - 단일한 디자인 착장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 가능

저작권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같은 일을 하고도 시각표준계약서로도 제품표준계약서로도 계약 가능

2. 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 관련 내용

산업부 고시 표준계약서에 대한 보완 필요 사항

1. 저작권의 특성 반영 안됨.
   - 단일한 디자인 착장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 가능

시각디자인 표준계약서 → 성과보상 불가

제품디자인 표준계약서 → 성과보상 가능

같은 일을 하고도 시각표준계약서로도 제품표준계약서로도 계약 가능

2. 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 관련 내용

산업부 고시 표준계약서에 대한 보완 필요 사항

2. 저작권의 특성 반영 안됨(2)

하나의 디자인 결과물은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이 혼합되어 있음.

- 따라서 하나의 디자인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세부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경우 국내외적으로 대항력이 높아짐.

EX) 실제로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시 애플의 경우 디자인 결과물을 잘게 쪼개어 특허, 상표, 디자인권 등으로 분류하여 등록함으로써 대항력을 높여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사례가 있음.

하나의 디자인 창작물을 하나의 범주(제품, 시각 등)로 분류할 수 없음.

3. 비금전적 반대급부에 대한 고려 미흡

디자인 인증제 의무화 및 창작자 제도의 활성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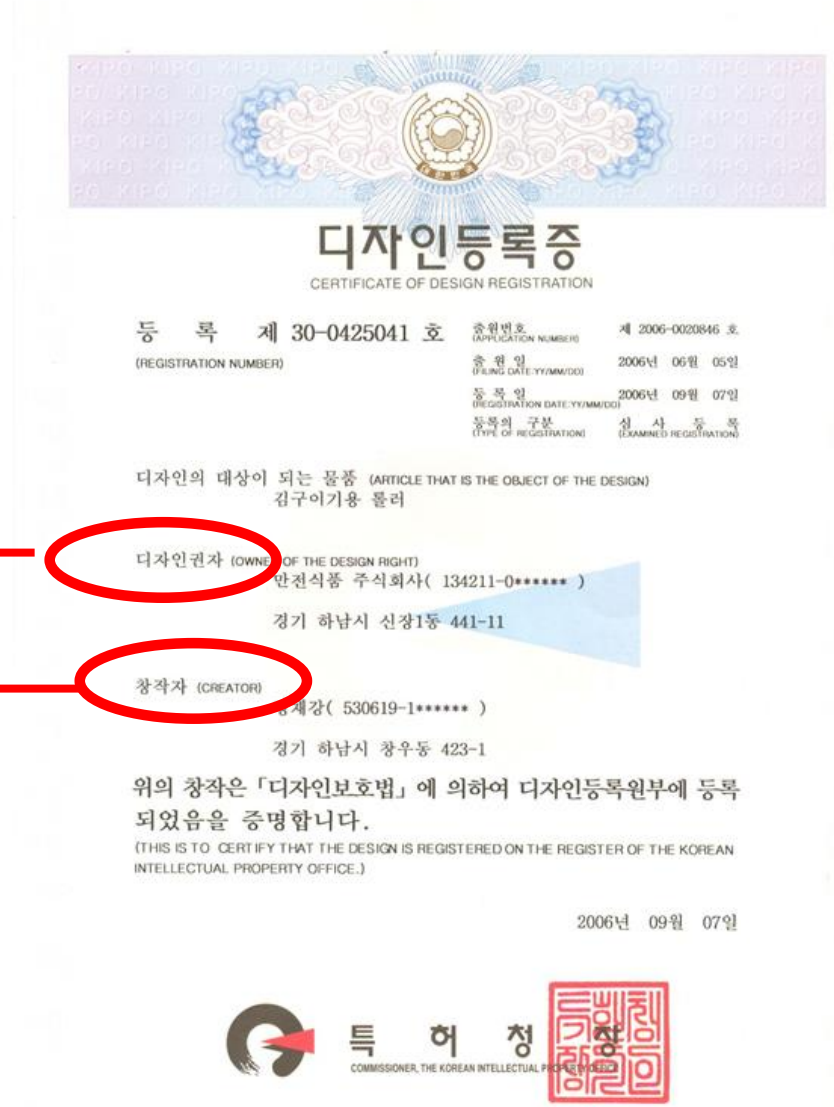

디자인등록증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등 록 제 30-0425041 호 (REGISTRATION NUMBER)

출원번호 (APPLICATION NUMBER) 제 2006-0020846 호

출 원 일 (FILING DATE:YY/MM/DD) 2006년 06월 05일

등 록 일 (REGISTRATION DATE:YY/MM/DD) 2006년 09월 07일

등록의 구분 (TYPE OF REGISTRATION) 심 사 등 록 (EXAMINED REGISTRATION)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ARTICLE THAT IS THE OBJECT OF THE DESIGN)
김구이기용 물러

디자인권자 (OWNER OF THE DESIGN RIGHT)
반전식품 주식회사(134211-0******)
경기 하남시 신장1동 441-11

창작자 (CREATOR)
송재강(530619-1******)
경기 하남시 창우동 423-1

위의 창작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06년 09월 07일

특 허 청 장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디자인권자

창작자

2. 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 관련 내용

산업부 고시 표준계약서에 대한 보완 필요 사항

4.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강제성 도입 내지 인센티브 제도 필요

- 표준계약서를 이용한 제품에 대한 인증제
- 표준계약서 활용 기업에 대한 조세 혜택 등의 지원
-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제고 기회 제공
-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제품 등에 대해 정부에서 우선 구매

3.디자인을 통한 지식재산권 획득과 관련한 내용

3. 디자인을 통한 지식재산권 획득과 관련

지식재산권(IP)는 길이(length), 넓이(breadth), 높이(height)의 세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 데,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

길이: 창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의미하는 것
EX) 저작권: 70년, 디자인보호법: 15년

넓이: 자신의 디자인창작물이 유사기술로부터의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와 방식
EX) 디자인특허: 친고죄 상표권: 비친고죄

높이: 지식재산권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EX) 저작권 획득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음. 특허는 특허청 심사(무심사) 등의 절차 필요

3. 디자인을 통한 지식재산권 획득과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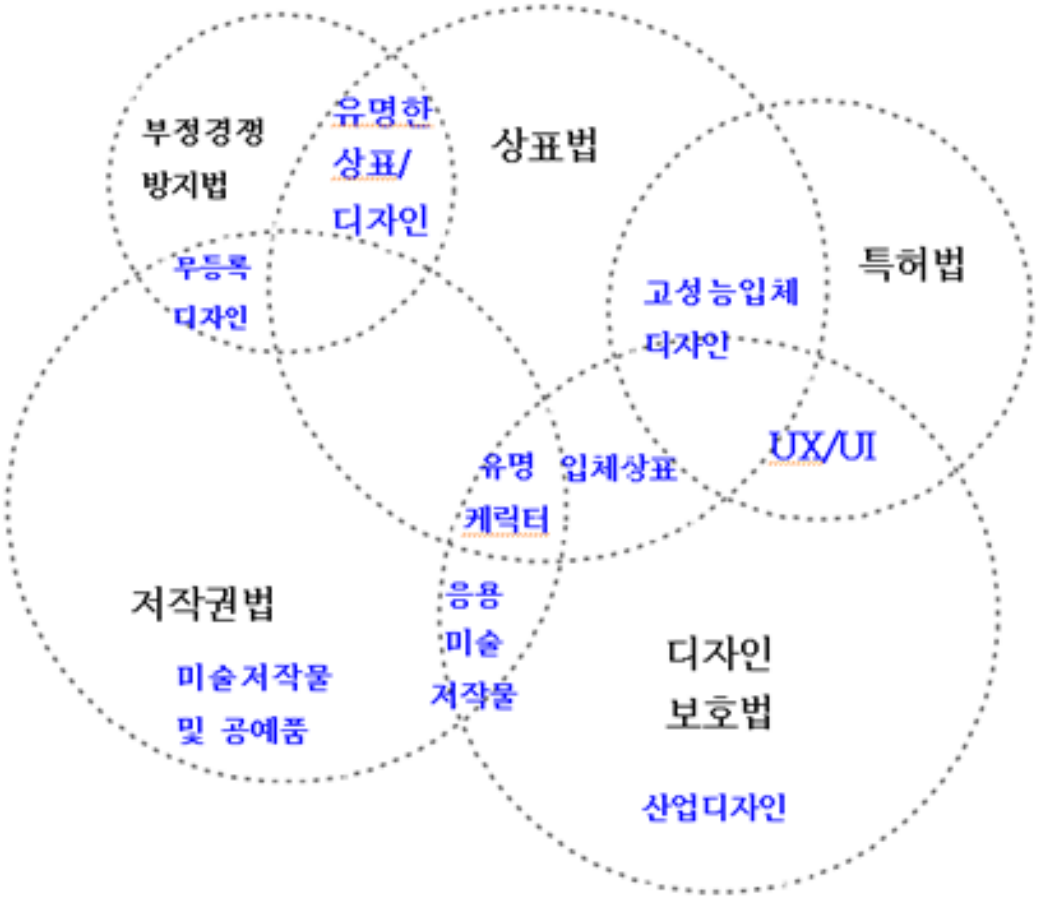

주) 김종균 특허청 심사관 분류자료

3. 디자인을 통한 지식재산권 획득과 관련한 내용

분쟁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무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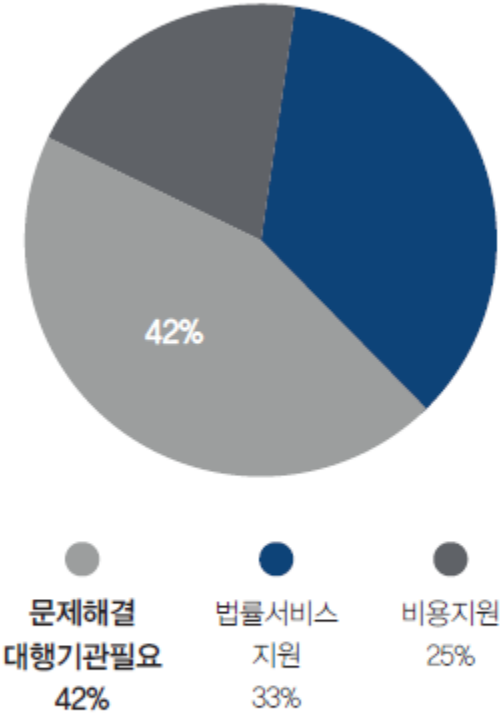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행기관의 필요성을 인식.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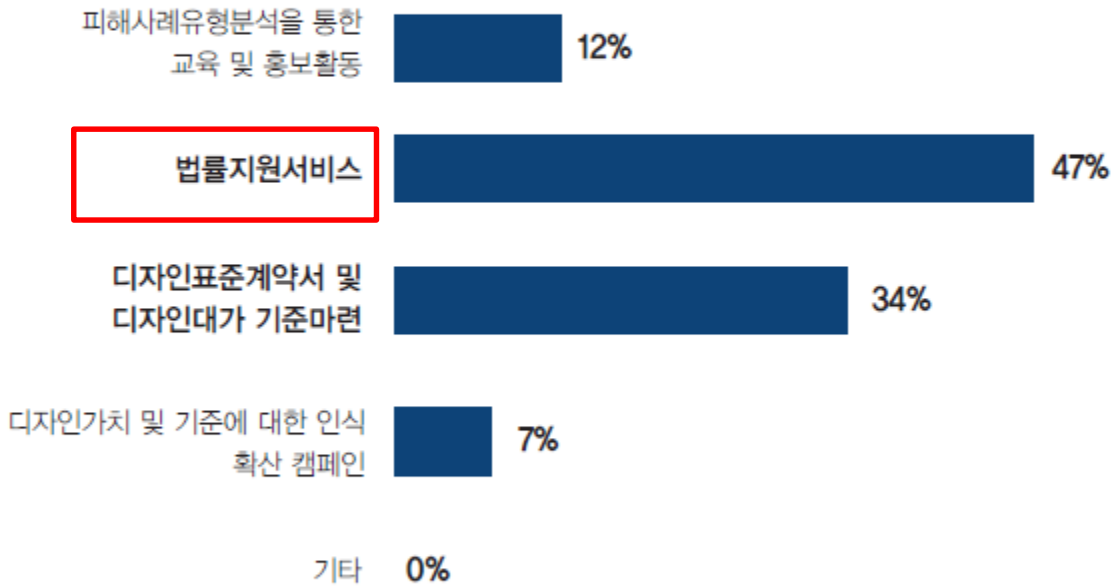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하여 법률지원서비스가 시행되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따라서 디자인기업 피해신고센터의 법률지원서비스가 좀더 강화되어야 할 것임

3. 디자인을 통한 지식재산권 획득과 관련한 내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인쿠르트社(gongmo.incruit.com) 국내 공모전 21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모한 아이디어를 누가 가질 것인가에 관한 규정
구비하지 않은 경우 60%(131개) 구비한 경우 40%(86개)

규정이 있는 86개도 공모전 주관기관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가 90%(86개 중 77개, 전체 217개 기준 35%)
아이디어 제안자가 갖는 경우는 그 중 7%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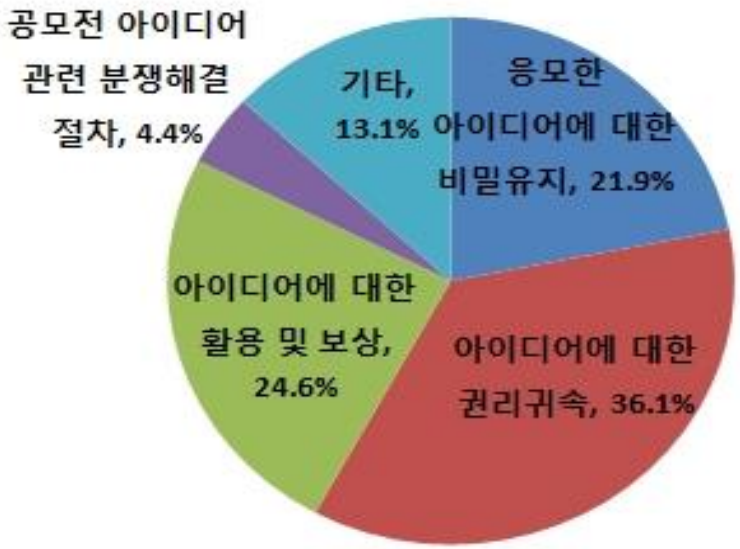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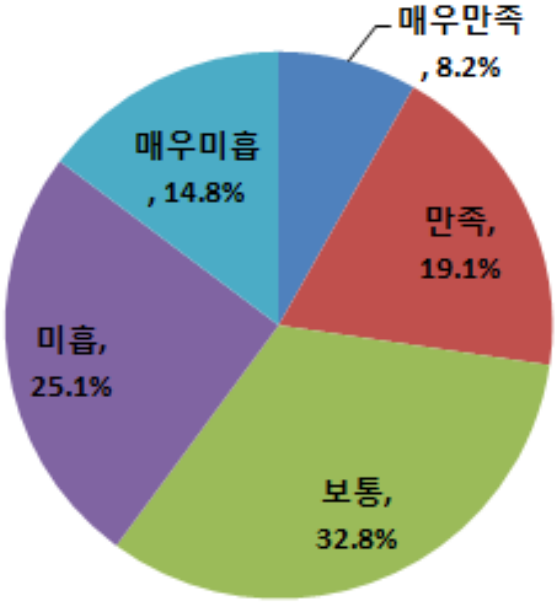

3. 디자인을 통한 지식재산권 획득과 관련한 내용

"해외의 경우 응모한 아이디어는 제안자가 소유하도록 규정, 그 대신 주관기관은 아이디어 활용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도록 규정"

특허청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공모전의 아이디어 보호 강화는 필수로 인식, 미래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과정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귀속, 정당한 보상 등을 담은 아이디어 보호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 2013년 9월 16일 보도자료-

Korea's Leading Think Tank

감사합니다.

KDI